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의 원인기제로서 수용자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이 수 정[†] 구 현 아 홍 영 오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들에 의해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하는 피해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교정공무원들이 과연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지 알아보았다. 사동 근무경험이 있었던 6급에서 9급 교정공무원 4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용자들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폭행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심각한 수준의 폭행피해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탈진감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주축요인분석 결과 세 가지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위축감, 신체적 피해, 경미한 말썽 등이었다. 신체적 피해로 인한 악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교정공무원을 선별하였다. 구체적 폭행피해경험이 있었던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로 실시하였던 인과모형분석은 폭행피해가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하고 중독에는 만성적인 탈진감으로 이어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교도관들의 정신과적 스트레스 장애가 과중한 교정업무와 유의한 인과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주요어 : 교정, 수용자 폭력, 피해자화, 외상 후 스트레스, 탈진

* 본 연구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031-249-9198, suejung@hanmail.net

업무로 인한 탈진은 어느 직장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간호원, 사회복지사 등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봉사직종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다(김병섭, 1994; 박경호, 2002; 박성수, 2002). 늘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 해주어야 하는 직무에 처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탈진에 이르게 되면 직무의 대상에 대해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김병섭, 1994), 예컨대 간호사가 환자를 물건 취급하거나 사회복지사가 저소득층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찰이 시민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업무로 인한 탈진현상이 교정공무원들에서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정공무원도 앞에서 언급한 직종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엄청난 행정업무량을 소화해야 하고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처리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평판과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기존의 응보적 행정철학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았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교정행정에도 서비스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그에 따라 양립이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보안과 교정교화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부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은 일반 다른 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지닌다. 그것은 교정시설이란 곳의 격리성과 무관하지 않다. “또 다른 재소자(the other prisoner),” “구금된 교정공무원(guards imprisoned)” 심지어 “전문적 재소자(professional prisoner)”라고 불리우는 것(이윤호, 2002)은 교정공무원의 근무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즉 벽 뒤에서(behind the

walls) 감금생활을 하는 것은 수용자들뿐이 아니라 교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교정공무원들은 많은 규율을 집행해야 하고, 고소고발과 진정의 위협 속에서 통제자로서의 역할과 교정교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은 살인적인 근무시간¹⁾, 찢통과 냉동실을 오가는 물리적 근무환경, 너무 많은 1인당 수용자수²⁾, 제한된 승진기회, 세상의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기에 신체적 위협에 대한 불안과 방어능력에 대한 확신 부족 등은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교도소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폭행했거나 수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반면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들에 의해 린치를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반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도소의 본질 상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는 교정공무원이 수용자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

- 1) 교정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외근과 내근에 따라, 또 교대제근무냐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무시간이 긴 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당 75시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윤호, 2003: 321).
- 2)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표하는 교정공무원 1인당 수용자수는 총 수용자 수를 총 교정공무원 수로 나눈 것으로 2001년 기준으로 교정공무원 1인당 5.1명이다. 그러나 실제 수용자들이 기거하는 영역에서 직접 접촉하는 사동근무자 1인당 수용자수는 보통 100명을 넘어선다.

다(동아일보, 2004년 7월 16일자).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교정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상의 위험 여부가 언론의 관심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 잠시 동안이었을 뿐, 교정공무원의 수용자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문제 시하는 반면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력사건은 그 자체를 사소하게 치부해버리거나 교정공무원들의 능력 부족이라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신체적 폭행의 빈도는 수용자들 간의 폭행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행위의 파급효과는 수용자들끼리의 폭행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행이 초래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증가와 직무 불만족은 바로 수용자들의 일상적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의 삶은 인권지향적 지침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사이의 일상적 상호작용의 질 그 자체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이다.³⁾

본 연구에서는 교도관들의 직무와 연관된 위험성 중에서도 특히 수용자들로부터의 폭력이 교도관들의 업무수행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교도관들의 정신건강에 수용자로 인한 폭력이 인과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업무와 관

련지어서 교도관들의 심리, 행동 상의 위축이 사실상 교정시설의 교화기능이나 보안업무의 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교정공무원들과 수용자와의 관계는 사실상 교정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극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물론 행형철학이니, 교정교화의 순기능이니 하는 문제도 거시적으로 보자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수용자들로부터의 시도 때도 없는 생명의 위협은 교도관들 개인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직장에서의 지나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최초로 인정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파생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재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경남지역 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 손 모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질환인 '적응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하여 최초로 산재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부산일보 2004년도 8월 16일자).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서 인정한 이 사례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격심한 직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 바, 예컨대 수용자들로부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아 특정 교정공무원이 정신심리적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공기관인 교정국에서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교도관들이 현장근무를 하면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이 있으

3) 교정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이 모두 잘못되었다거나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폭행과 마찬가지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에 대한 관심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 1. 교도소 내 폭력 및 사고실태

사유	싸움, 폭력	소란난동	교정공무원 폭언폭력	지시 및 입실거부	자살기도 및 자해문신	갈취, 공갈
2000	3,704	1,026	390	1,780	359	-
2001	2,400	592	264	1,205	167	26
2002	4,151	1,076	518	1,991	364	68
2003. 6	2,055	493	205	807	170	26

출처: 2003년 국정감사자료집, 57-59 쪽

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부적응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2003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나타난 징벌 집행 현황을 재구성한 수치이다. 교도소 내의 폭력과 기타 사고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수용자간의 싸움 폭력이고, 수용자들의 소란난동과 지시거부입실거부가 그 다음으로 빈번히 발생하였다. 수용자 싸움 폭력과 교정공무원 폭언 폭력은 2001년 잠시 주춤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가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특히 최근 교도소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급속하게 전파된 교도관들의 무장 해제와 그에 따른 신체적 위협에의 노출이, 수용자들의 폭력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교도관들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까지도 발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직무탈진감

교도관들의 피해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직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도를 평가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삶의 터전이며 자아를 성취하는 곳이고 동료와 친구들을 사귀는 친교의 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직장은 생계유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중한 업무나 과열된 경쟁의식, 사람들과의 불화 등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직장에는 잠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어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스트레스가 도를 넘게 되면 일에 대한 능력과 동기가 현저히 저하되고 종국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인 직무스트레스 연구와는 달리 최근에는 탈진감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신강현, 2004). 탈진감은 스트레스의 한 유형(Cordes & Dougherty, 1993)으로서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역기능적인 반응양식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적응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 탈진감으로 빠져들게 되면 다시 이전 적응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한

다(Schaufeli & Enzmann, 1998). 탈진감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Maslach(1976, 1982)가 개발한 2문항으로 구성된 Maslach Burnout Inventory(이하 MBI)가 있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던 국내 연구에서 번역본 MBI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하는 탈진감은 직무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크게 벗어날 것이라 가정하였기에, 스트레스 척도보다는 탈진감 척도로서 교정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각성상태가 어느 정도 만성적이며 부정적인지를 탐색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만일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충분한 외상경험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심각한 외상적 사건이란 전쟁, 자동차 사고, 폭력, 강간 테러 및 폭동, 지진, 홍수, 화산 폭발 등을 말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일종의 불안장애(Chemtob & Carlson, 2004)로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외상적 사건)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후 일어나는 정신장애 증상을 통칭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구체적인 증세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1) 외상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경험된다. 예를 들면, 꿈에 계속 나타난다거나, 반복적으로 그 사건이 생각난다거나,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거나 느끼는 경우 등이 이

에 해당한다. (2) 외상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회피한다거나(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나 대화를 피하거나, 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하지 못하기도 한다), 전과는 달리 반응이 둔화된다(활동이나 흥미가 감퇴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된다). (3) 불면증, 분노의 폭발, 집중력의 감퇴, 놀람반응 등 과민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증세는 나아가 우울, 불안, 일상생활에서의 집중곤란, 흥미상실, 대인관계에서의 무관심과 멍청한 태도, 짜증, 놀람, 수면장애 등을 야기하기도 하며 정신적인 무감각과 부정기적인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신체증상 등이 동반되며, 흔히 기억장애나 공황발작, 미칠 것 같은 과잉행동, 심리적 위축으로도 나타난다고 알려진다. 장기적으로 이런 반응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심인성장애로 발전될 수 있으며 약물남용이나 알코올남용이 병발하기도 한다.

극심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경험으로서 자주 연구가 수행되어 온 분야는 일반적으로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다 (Dobbs & Wilson, 1960; Wegner, 1948). 하지만 최근에는 폭력의 피해자들, 예컨대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활발히 연구(Chemtob & Carlson, 2004; Van Horn & Lieberman, 2004)가 수행되고 있다. 폭력피해로 인한 반응은 앞에서 지적한대로의 대표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와 우울증, 분노, 해리장애 등 심각한 정신장애들이 동반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에 있어 발생하는 폭력을 동반한 교정사고의 피해경험은 충분히 외상경험으로 취급될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교정사고로 인한 외상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지만, 뉴욕 주 교정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하여서는 수행자로 인한 폭력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교정직 공무원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인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Blau, Light, & Chamlin, 1986). 특히 병가를 내는 교정공무원들 중 50% 이상이 알콜중독이나 정서장애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다. 폭력으로 인한 외상경험과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하는 극심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교정공무원들에게 있어서도 다양한 심인성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하는 폭력피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지에 관하여서는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직무로 인한 탈진감과의 관계를 밝혀냄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위험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때 추정되는 관련성은 수용자들에 의해 폭력피해를 입은 교정공무원들은 일시적으로 폭행경험에 기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느낄 것이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는 교정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결국에 가서는 탈진과 같은 업무에의 악영향으로 이어지리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사동 근무경험이 있는 6급에서 9급 교정공무원 420명이었다. 전국지역의

교정시설을 골고루 포함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지역별 참여수를 살펴보면, 충청지역에서는 D교도소 120명, 경북지역에서는 C교도소 80명, 경남지역에서는 B구치소 100명, 호남지역에서는 K교도소에서 100명이었다. 응답자들은 모두 남성들이었으며 이들의 연령대는 30대가 212명(50.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26명(30.0%), 50대 이상이 50명(11.9%), 20대가 30명(7.1%) 있었다. 이들의 평균 근무연한은 12.79년(SD=8.30)이었으며 이들 중 사동경험이 일년 이상 있는 응답자들은 345명(82.1%)으로서 대부분 사동근무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소속은 대부분 보안과(301명, 71.7%)였으며 대부분이 교정직(381명, 90.7%)이었다.

이러한 420명들에게는 폭력사건 및 피해경험에 관한 설문지와 탈진감척도가 측정되었으며, 이들 중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수용자들로 부터의 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240명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척도가 추가로 실시되었다.

측정도구

폭력사건 및 피해경험

교정공무원들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정사고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폭력피해의 사례에 대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었던 개방형 질문지가 주어졌다. 구조화된 설문지의 설문내용은 교정공무원들이 사동근무 중 수행자들과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경험, 즉 신체적인 피해에서부터 심리적인 피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상황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표 1).

탈진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교도관들의 직무에 기인한 만성적인 탈진감을 측정하였다. 탈진감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Maslach(1976, 1982)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 22문항으로 구성된 Maslach Burnout Inventory(이하 MBI)는 주로 고관여와 고실적을 요구하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것이었다. 한국판 MBI는 비교적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김민호, 1991), 김정인(1997) 역시 국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22문항 중 18문항이 구성하는 내적 요인구조가 상당히 설득력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경우 탈진총점의 평균은 56.89 표준편차는 11.3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2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MBI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MBI에 대하여서는 420명 모든 응답자들이 반응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Impact of Event Scale(IES; Horowitz, Wilner, & Alvarez, 1979)을 사용하였다. IES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재화와 회피, 두 개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표본에 적용해 본 결과 .79에서 .92 정도의 내적 합치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Horowitz et al., 1979). 교통사고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의 기준점으로는 30점(Bryant & Harvey, 1996)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35점이 기준점으로 적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Blake, Weathers, Nagy, Kaloupek, Klauminzer, Charney, & Keane, 1990).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번역본은 세브란스 정신과에서 제작한 것이었는데, 일반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평균은 28.60, 표준편차는 9.70이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집단들의 평균은 39.10, 표준편차가 10.01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2004; 이선미, 은헌정, 1999). 본 연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신체 및 심리적인 피해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던 240명만이 한국판 IES에 응답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산출된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절차

법무부 교정국의 허가를 얻어 설문에 응하도록 지정된 4개 교도소의 교정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모든 조사는 주 연구자였던 심리학과 교수와 연구원들의 입회 하에 실시되었다. 전체 설문은 전반적인 교정사고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구조화된 질문지와 탈진감 검사지(MBI), 그리고 폭력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하게 한 개방형 질문지와 그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검사지(IES)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적이 없는 교도관들은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 약 40분가량 걸렸으며 폭력피해 경험을 서술 하였던 교도관들은 전체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 약 1시간 15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응답에 임했던 모든 교도관들은 설문응답이 종료된 후 연구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중 본인들의 스트레스 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요청한 교도관들에게는 검사결과를 추후에 통신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결 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수용자 폭력의 실태

교정공무원들의 폭력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에서는 폭력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혹은 심리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언어폭력에는 모욕적 혹은 위협적 언어사용과 욕설과 비어 사용이 포함되고, 신체적 폭력에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와 전치 2주 미만의 폭력과 더불어 침뺨기, 뺨때리기, 벽에 밀어붙이기, 오물 던지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적 혹은 심리적 폭력에는 부당한 고소나 진정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수용자에게 “코가 끼여서” 낭패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신체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 수용자의 출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감 등이 정서적 폭력/스트레스의 측면에서 조사되었는데 4), 언어폭력은 80% 이상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 중 폭력(단순, 심각한 폭력, 뺨맞기 포함)의 경험은 20%정도의 교정공무원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같은 신체적 폭력 중 벽으로 밀치기, ‘침뺨기’, ‘오물던지기’ 등도 상당히 많은 비율의 교정공무원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상으로 보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서적 혹은 심리적 폭력에 대한 경험정도이다. 정서적 혹은 심리적 폭력의 경험정도는

4)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폭력의 유형을 알아내기 위해 먼저 수용자와의 접촉경험이 많은 교정공무원에게 자신의 직접경험이나 간접경험 등을 통해 가장 전형적인 폭력의 종류를 제시하도록 하여 문항들이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코걸이’ 당한다는 말은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수용자에게 발미를 잡혀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매우 높아 거의 10명중 8-9명은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교정공무원의 94.3%가 신체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런 신체적 불안감의 확대는 자신감, 권능감의 결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살이나 자해 등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93.5%), 고소나 진정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91%), 수용자들의 부당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91.4%) 등은 그 자체가 교정공무원들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말해 줌과 동시에 이렇게 높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직무충실도나 만족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표 2 참조).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되었던 피해내용은 표 3에서와 같은 잠재적인 구인으로 정리되었다. 베리맥스 회전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된 교정공무원들의 피해내용은 세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유치 1을 넘었던 세 요인은 우선 ‘심리적 위축감’, ‘신체적 피해’, ‘경미한 말썽’ 등이었다. 이들 세 요인은 각기 교정공무원들이 수행자들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피해의 총분산을 69.95% 설명해주었다. 이때 심리적 위축감은 25.19%의 분산을, 신체적 피해는 21.60%를, 경미한 말썽은 19.16%의 분산을 각기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신체적 폭력에 대하여 개방형 설문에 응답하였던 240명의 교정공무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로 인해 경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들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균은 44.80, 표준편차는 9.15였다. 이는

표 2. 최근 1년 동안 교정공무원들의 폭력피해유형별 경험 정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가끔 경험한다	자주 경험한다
언어 폭력	욕설이나 비어	18(4.3%)	29(6.9%)	200(47.6%)	173(41.2%)
	모욕적 혹은 위협적 표현	23(5.5%)	64(15.2%)	226(53.8%)	107(25.5%)
신체 폭력	심각한 폭력(전치 2주 이상)	234(55.7%)	127(30.2%)	50(11.9%)	9(2.1%)
	단순한 폭력(전치 2주 미만)	209(49.8%)	124(29.5%)	79(18.8%)	8(1.9%)
	뺨 맞기	199(47.4%)	148(35.2%)	68(16.2%)	5(1.2%)
	벽으로 밀치기	104(24.8%)	145(34.5%)	154(36.7%)	17(4.0%)
	침 뱉기	79(18.8%)	104(24.8%)	210(50.0%)	27(6.4%)
	오물 투척(쓰레기나 용변)	101(24.0%)	108(25.7%)	181(43.1%)	30(7.1%)
	신체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	6(1.4%)	18(4.3%)	172(41.0%)	224(53.3%)
정서 폭력	수용자의 시비로 인한 '코걸이'에 대한 불안감	15(3.6%)	31(7.4%)	176(41.9%)	197(46.9%)
	고소나 진정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9(2.1%)	29(6.9%)	199(47.4%)	183(43.6%)
	자살, 자해, 폭력 등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	5(1.2%)	22(5.2%)	156(37.1%)	237(56.4%)
	출소한 후 수용자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10(2.4%)	73(17.4%)	262(62.4%)	74(17.9%)
	수용자들의 부당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	5(1.2%)	31(7.4%)	137(32.6%)	247(58.8%)

N = 420

일반대학생들의 평균($M=28.60$, $SD=9.70$)보다 약 한 단위 표준편차 이상 높은 점수였으며 세브란스 정신과에 내원하거나 입원하였던 정신과 환자들($M=39.10$, $SD=10.01$)보다 약 .5 단위 표준편차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교정공무원들 중 구체적인 외상경험이 있었던 응답자 대상으로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세 가지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리맥스 회전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된 교정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는 이전의 연구(세브란스병원 정신과, 2004; 이선미와 은현정, 1999) 결과와는 달리 두 가지 하위요인이 아닌 세 가지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유치 1을 넘었던 세 요인은 '회피', '내재화', 및 '부인' 등이었다. 이들 세 요인은 각기 교정공무원들이 수형자들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탈진감의 총분산을 53.06% 설명해주었다. 이때 회피는 24.50%의 분산을, 내재화는 19.00%를, 부인은 9.56%의 분산을 각기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의 직무로 인한 탈진감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교정공무원이 보고하

표 3. 폭력피해경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위축감	신체적 피해	경미한 발생	communality
신체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	.82			.71
수용자의 시비로 인한 '코걸이'에 대한 불안감	.77			.67
고소나 진정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74			.62
자살, 자해, 폭력 등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	.71			.52
출소한 후 수용자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68			.54
수용자들의 부당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	.66			.51
심각한 폭행(전치 2주 이상)		.89		.82
단순한 폭행(전치 2주 이하)		.86		.81
뺨 맞기		.86		.79
벽으로 밀치기			.54	.63
침 뱉기			.75	.70
욕설이나 비어			.74	.66
모욕적 혹은 위협적 표현			.72	.64
오물 투척(쓰레기나 용변)			.65	.57
고유치	3.53	3.02	2.68	
설명량 (%)	25.19	21.60	19.16	

있던 탈진감의 평균은 77.52($SD=10.33$)로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김민호(1991)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평균 탈진감($M=56.89$, $SD=11.33$)보다 두 표준편차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물론 MBI 점수가 표준화되어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결과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사동근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탈진

감이 다른 직종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부적응적임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MBI로 측정된 교정공무원들의 탈진감은 표 5에서와 같은 네 가지의 하위요인이 확인되었다. 베리맥스 회전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된 교정공무원들의 탈진감은 김정인(1997)의 연구에서 밝혀진 세 가지 요인들이 아닌 네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유치 1을 넘었던 네 요인은 '정서적 소진', '비효율적 문제해결', '개인적 성취결여' 및 '비인격화' 등이었다. 이들 네 요인은 각기 탈진감의 총분산을 38.95% 설명해주었다. 이때 정서적 소진은 21.22%의 분

5) 본 연구에는 교정공무원 이외에 다른 직종의 비교집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점수 개념을 도입하였다. 참고로, 정상분포를 가정할 때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pm 2SD$ 사이에는 규준집단의 9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분포한다

표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회피	내재화	부인	communality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73			.68
내가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 복잡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감정을 다루고 싶지 않다.	.69			.61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을 피한다.	.63			.61
나의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 버리려고 노력한다.	.61			.44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61			.64
그 사건이 생각나거나 떠오를 때마다 나 자신이 혼란되지 않으려고 피한다.	.60			.45
그 사건의 장면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른다.		.69		.69
그 사건에 관한 꿈을 꾸다.		.63		.55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나에게 그 사건에 대한 감정(느낌)들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57		.65
다른 일들이 나에게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54		.59
잠이 들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54		.41
내가 그럴 의도가 없을 때에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51		.37
그 사건에 대해 고조된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예, 강한 공포감 등)		.49		.50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느낀다.			.67	.54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하다.			.47	.23
고유치	3.68	2.85	1.43	
설명량 (%)	24.50	19.00	9.56	

산을, 비효율적 문제해결은 6.77%를, 개인적 성취결여는 5.89%를, 마지막으로 비인격화는 5.05%의 분산을 각기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탈진감과 폭력피해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았다. 상관 분석 결과 업무와 연관된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업무로 인한 탈진감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진감은 심리적 위축감과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을 지녔다($r=.50, N=420, p < .001$). 탈진감과 신체적 피해는 $.24 (N=420, p < .001)$ 의 상관이 그 이외 경미한 말썽과 탈진감과는 $.36(N=420, p < .001)$ 의 상관이 나타났다.

폭력피해경험과 탈진감 그리고 외상 후 스

표 5. 탈진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소진	비효율적 문제해결	개인적 성취결여	비인격화	communality
나는 업무로 인한 탈진감을 느낀다.	.83				.72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서 또다른 하루를 맞이해야 할 때 피곤함을 느낀다.	.77				.61
퇴근 경에는 완전히 녹초가 된 느낌이다.	.74				.56
나는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갈된 느낌이다.	.69				.51
너무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것 같다.	.67				.52
업무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61				.44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59				.40
하루 종일 수용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피곤하다.	.57				.42
나는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느낌이다.	.52				.37
수용자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고 비난하는 것 같다.	.35				.23
나는 수용자들의 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다룬다.	.73				.55
나는 수용자들과의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	.55				.37
나는 나의 직업을 통해 타인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46				.36
나는 업무 수행 중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차분하게 다룬다.	.38				.21
이 직업을 통해 나는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을 성취해왔다.			.65		.54
나는 수용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유쾌해진 것을 느낀다.			.64		.49
이 업무가 나를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71	.68
이 업무에 종사한 이후 사람들에게 더욱 무감각해졌다.				.50	.45
고유치	6.07	2.55	1.23	1.12	
설명량 (%)	27.57	11.60	5.58	5.08	

트레스 장애(PTSD)의 관계

폭력피해의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탈진감에 어떤 인과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분석에 포함되었던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에 의해 신체적인 폭행을 경험하였다고

개방형 설문지에 응답하였던 240명이 포함되었다. 우선 폭력피해경험으로 인해 교정공무원들이 탈진하게 되는 데에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중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되었다. 이는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경험이 교정공무원들의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로 인해 교정공무원들의 만성적 탈진이 점진적으로 야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잠재변수들 간의 인관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AMOS를 이용한 결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외상경험)에 대한 폭력피해경험(이하 폭력경험)의 경로계수는 .246($p < .001$)이었고, 탈진감에 대한 외상경험의 경로계수는 .789($p < .001$)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에서는 폭력에 대한 피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교도관들이 업무로 인해 소진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표 4에 제시된 이 모형의 적합도는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 하였지만 RMSEA가 .05를 넘었으며 NFI의 수준도 .90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추가로 대안적인 모형들을 탐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피해의 경험이 탈진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추가해보기로 하였다(그림 2 참조). 이 수정모형에서 외상경험에 대한 폭력피해경험의 경로계수는 .221($p < .001$), 탈진감에 대한 외상경험의 경로계수는 .340($p < .05$), 탈진감에 대한 폭력피해경험의 경로계수는 1.127($p < .001$)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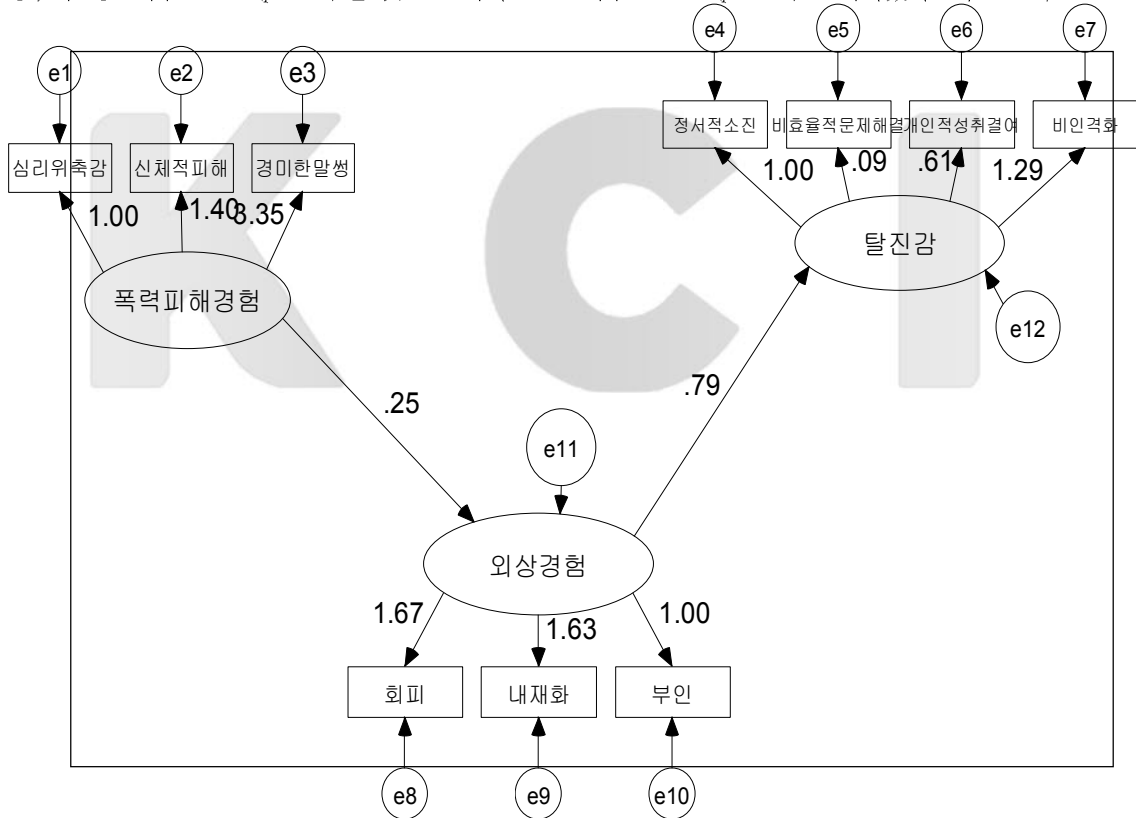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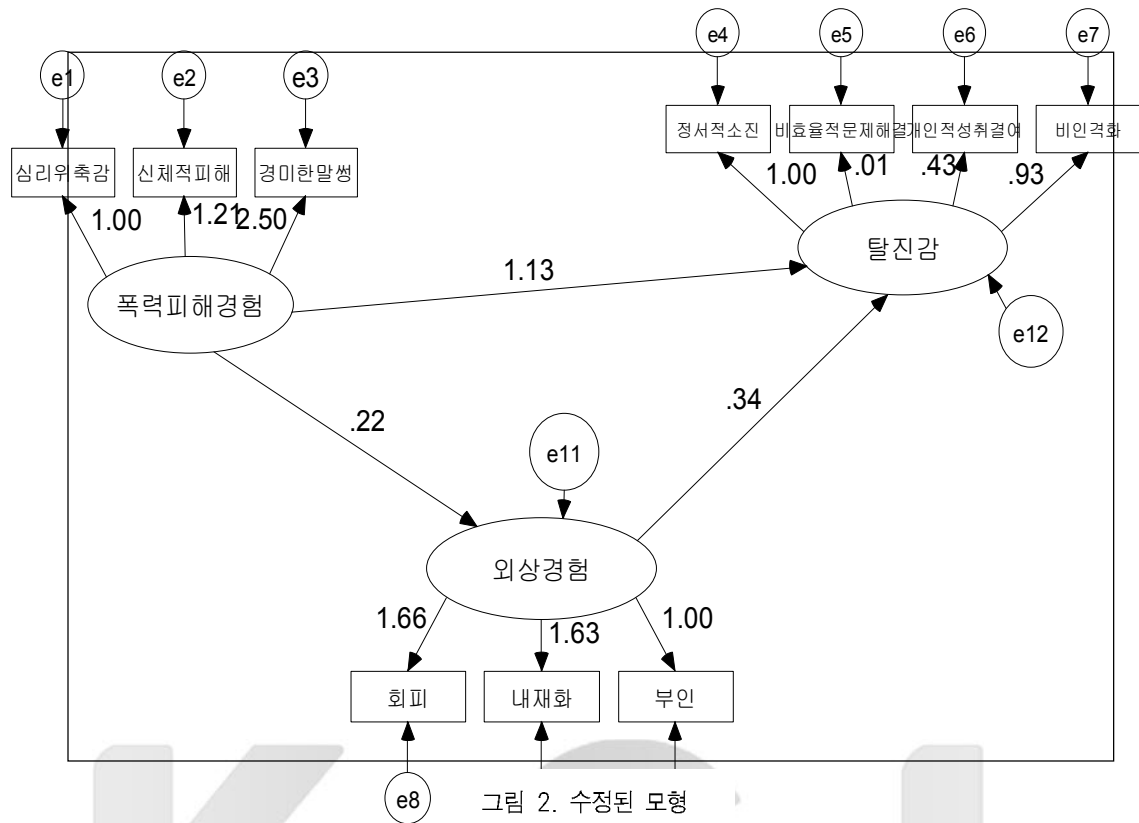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에서는 각 모형의 적합도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절대적합도는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본 연구에서는 χ^2 , GFI, RMSEA를 살펴보았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절대적합도는 가설모형, 수정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정모형의 결과가 가설모형의 적합도보다 좀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χ^2 는 가설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GFI는 더 향상되었고 RMSEA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살펴보는 증분적합도

표 6. 모형의 적합도 평가

모형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간명적합도	
	χ^2	GFI	RMSEA	NFI	TLI	PNFI	AIC
가설모형	245.784 ***	.905	.070	.807	.763	.592	289.784
수정모형	160.183 ***	.927	.039	.874	.853	.622	206.183

GFI=기초적합지수, RMSEA=원소간 평균차이 NFI=표준적합지수, TLI=Turker Lewis Index, 비표준적합지수, PNFI=간명표준적합지수, AIC=Akaike 정보 계수

표 7. 탈진감의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상관효과	허위효과
폭행피해경험	.590	.039	.629	.629	.000
PTSD	.126	.000	.126	.031	.095

분석한 결과, 수정모형의 NFI, TLI가 .80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간명 적합도중 AIC를 살펴보면, 수정모형이 가설모형보다 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모형의 경로계수를 표로 작성한 것은 표 7에 제시되어있다. 탈진감에 대한 폭력피해경험의 직접효과는 .590, 간접효과는 .039, 전체효과는 .629, 상관효과는 .629, 허위효과는 .000이었다. 탈진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직접효과는 .126, 간접효과는 .000, 전체효과는 .126, 상관효과는 .031로 허위효과가 .0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변수들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종모형에 의하면, 폭력피해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여 탈진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탈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는 수용자들의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피해경험은 그림 3에서처럼 교도관들의 직무 소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과적 질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직무탈진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의 관계를 밝혀내어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위험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420명의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교정공무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서적 혹은 심리적 폭력으로 나누어 폭력경험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정서적 혹은 심리적 폭력으로서 이는 불안감과 무력감이 교정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대부분의 교정공무원(94.3%)이 신체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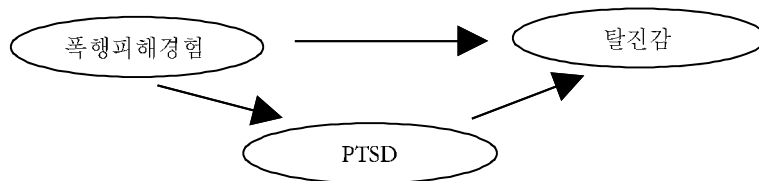


그림 3. 선정된 최종모형

답했다는 사실은 수적으로 보면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와의 접촉에 있어서 본인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낼 방안이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수감과 같은 계구의 사용금지 등 최근의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은 혹시라도 물리적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게 한다. 그로 인해 결국에는 심각한 심리적 위축이 오게 되고 이런 신체적, 심리적 위축감이 만성적인 피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폭행피해의 경험은 직접적으로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매개로 하여 교도관들의 만성적 탈진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확인된 구체적인 폭행피해의 경험이 있었던 211명의 자료에서 확인된 교도관의 스트레스 성 질환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수용자 폭행은 교정직 공무원이 받는 스트레스원 중 가장 큰 원인이 신체적 위협이라는 미국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Jacobs, 1978; Lombardo, 1981).

근로자들이 직무와 관련 지위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게 되므로,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원과 정신질환과의 인과성을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교정공무원들이 당해야 하는 폭행피해는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다. 바로 이 폭행피해로 인해 교정공무원들은 스트레스성 질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정신과적 질환의 유무를 측정하였던 것도 교도

관들이 경험하는 수용자로 인한 폭행피해의 경험이 불가피한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였던 것이었고, 인과모형 분석의 결과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경험이 정신질환의 충분한 원인제공원이 됨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정신질환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불가피한 스트레스원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가능성에 따라 동일한 스트레스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변지은, 이수정, 유재호, 이훈구 1997; 이종목, 송대현, 박한기, 송병일, 1981; Winnust, 1984). 외국의 경우 범죄자들을 체포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 유발원을 안고 있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상담을 전공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직장보험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경우 시설 내에서 교정사고를 당하여도 마땅히 심리적 고통을 토로할 자는 그 누구도 없다. 오히려 교정사고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여겨, 교정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밀로 덮어두려 하고 있다. 특히 사동근무를 도맡게 되는 하급 교정공무원들의 경우 수행자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상경험을 당하였다는 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자신에게 외상경험을 안겨준 그곳으로 곧바로 출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폭력피해를 입은 교정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M=44.80$, $SD=9.15$)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자 호소하는 정신과 환자들의 증세($M=39.10$, $SD=10.01$)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은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 외상장면을 떠나서 일단 구조를 요구할 수 있는 병원으로 피신하였으나 교정공무원들의 경우 외상을 야기한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외상경험의 정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오히려 정신과 환자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현 단계에서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들에 대하여 체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에 대한 통제력은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피해경험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예컨대 특정 수용자의 가석방 심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판단 기준을 해당 교정공무원의 평가에 좌우되게 한다면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에 대한 통제력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교정공무원들의 불공평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도 꼭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들이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정도를 밝혀줌으로써 교정현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교정공무원의 자기보고식방법에 의한 자료수집에 근거했다는 점과 폭력피해경험, 탈진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관계규명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기보고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측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는 폭력피해경험과 탈진감 그리고 외상경험의 경로를

고려하여 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및 탈진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 및 교정현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민호 (1991). 교사스트레스와 탈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병섭 (1995).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 원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29(2), 449-467.
- 김정인 (1997). 부정 정동과 사회적 기대가 직무 스트레스와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동아일보 (2004, 7월 16일자). 재소자에 폭행당한 교도관 끝내 사망.
- 박성수 (2002).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3호, 99-135.
- 변지은, 이수정, 유재호, 이훈구 (1997). 근로자들의 정서관련 특성이 직무로 인한 탈진감에 미치는 영향: 탈진감에 대한 저항기제로서의 정서지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1(1), 23-52.
- 부산일보 (2004. 8. 16.). 노동의 그늘, 직업병: 노동자 위협하는 직업병 -과로와 스트레스
-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2004). 세브란스 정신과 진단평가지 G형. 미간행. 서울: 세브란스 정신과.
- 신강현 (2004). 직무탈진과과 직무개입: 구성개념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논문집, 19-30.
- 이선미, 은현정 (1999).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신경

- 정신의학, 38(2), 501-513.
- 이윤호 (2002). 교정학개론. 박영사.
- 이윤호 (2003). 교정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305-430, 교정국.
- 이종목, 송대현, 박한기, 송병일 (1991).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성과의 관계모델 검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4(1), 1-21.
- Blake, D. D., Weathers, F. W., Nagy, L. M., Kaloupek, D. G., Klauminzer, G., Charney, D. S., & Keane, T. M. (1990). A clinician rating scale for assessing current and lifetime PTSD: The CAPS-1. *Behavior Therapy, 13*, 187-188.
- Blau, J. R., Light, S. C., & Chamlin, M. (1986).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on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 study of prison staff. *Work and Occupations, 13*, 131-156.
- Bryant, R. A., & Harvey, A. G. (1996). Initial post-traumatic stress responses following motor vehicle acciden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223-234.
- Chemtob, C. M., Carlson, J. G. (2004). Psychological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1*(3), 209-226.
- Cordes, C. L., & Dougherty, T. M. (1993). A review and integration of research on job burnou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 621-656.
- Dobbs, D., & Wilson, W. P. (1960). Observation on persistence of war neurosis.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12*, 686-691.
- Horowitz, M. J., Wilner, N.,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 209-218.
- Ivancevich, J. M., & Mattreson, M. T. (1980). *Stress and Work: A managerial perspective*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Co.
- Jacobs, B. J. (1978). "What prison guard think: Profile of the Illinois force". *Criminal and Delinquency, 22*. 185-196.
- Lombardo, L. X. (1981). Occupational stress in correction officer: Sources, coping strategies, and implications. In S. E. Zimmerman & H. D. Miller (Eds). *Corrections at the crossroads: Designing policy perspectives in criminal justice*. Beverly Hill, CA: sage.
- Maslach, C. (1976). Burned-out. *Human Behavior, 5*, 16-22.
- Maslach, C. (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chaufeli, W. B. & Enzmann, D. (1998). *The burnout companion to study and practice: A Critical analysis*. London: Taylor & Francis.
- Selye, H. (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 Van Horn, O., & Lieberman, A. F. (2004). *Domestic violence and parent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Unpublished manuscript.)
- Wegner, M. A. (1948). Studies of autonomic balance in Army air forces personnel. *Comparative Psychology Monographs, 19*.
- Winnust, J. A. (1984). Stress in organization, In M. D. Dunnette & L. M. Hough(Eds). *Handbook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1 차원고집수 : 2005. 2. 1
2 차원고집수 : 2005. 4. 30
최종계재결정 : 2005. 8. 8

Victimization of Inmates Violence against Correctional Officers as a Cause of Their Stress-Related Mental Health Problems

Soo Jung Lee Hyunah Koo Young-Oh Hong

Criminologic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experience of victimization caused by inmates' violence might affect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PTSD and burnout experience. The analysis results from 420 correctional officers presented that officers responsible for security of prison cells reported serious degree of maladaptation in burnout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rincipal factor analysis of items to measure officers' victimization by inmates saturated a three-factor model to have the best fit. Three factors were psychological withdrawal, victimization by physical violence, and small disputes between inmates and officers. Additionally, 240 officer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being victimized by inmates' physical abuse. The indices of chronic burnout and job-satisfaction were turned out to be much more maladjusted among officers abused by inmates physically. Furthermo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appli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latent variables: physical abus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burnout experience. It was found that victimization by inmates' physical violence made a causal effect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roduced chronic burnout experience. This relationship confirmed that there might be a causal effect of being physically abused by inmates on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problem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key words : corrections, inmate violence, victimizati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urnout